

춘천지방법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79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춘천시 J 대 323㎡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피고3.에 대하여)3. 자백간주 판결: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김도현

별지